

신 고 서

I. 위법행위의 요지.....	5
1. 피신고인 메타 플랫폼스 잉크.....	5
2. 피신고인 엑스 코프(X Corp.).....	6
3.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6
4.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국의 조사.....	6
II. 신고인과 피신고인들 및 이용자 개인정보 AI 모델 훈련 무단 이용.....	8
1. 신고인들.....	8
2. 피신고인들.....	8
3. 피신고인 1 -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하고 AI 학습과 AI 서비스에 무단 이용.....	10
4. 피신고인 3 -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하고 AI 학습과 AI 서비스에 무단 이용.....	16
III. AI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	21
1. AI 시스템과 AI 모델.....	21
2. AI 모델 개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24
IV. 피신고인 1, 3의 AI 모델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29
1. 정의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에 사용.....	29
2.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제한 없음.....	30
3. "특정 목적"에는 제한이 없음.....	30
4. 시간 제한 없는 개인정보 사용.....	31
5.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가명화 금지.....	31
6.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32
7.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 동의자와 비동의자(처리중지요구자)의 정보 분리	

불가능	32
8. 개인정보는 처리 중지를 요청해도, 한번 학습 개인정보로 이용되면 AI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음.....	33
V. 피신고인 1, 3은 모두 AI 학습과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그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33	
VI. 피신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의 개발, 활용에 이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34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	34
2. ‘피신고인 1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6
VII.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57
1. 처리정지와 동의철회권.....	57
2. 피신고인 1, 3은 처리정지나 동의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57
VIII. 기타	60
1. 최소수집의 원칙과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60
2. 민감정보의 이용제한 위반	61
IX. 결론.....	61

신 고 서

신 고 인 1.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대표 오병일

2. 정보인권연구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대표 이영음

3. 000 외(별첨)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3, 7층, 8층(서초동, 서희
타워), 전화번호 02-3476-6002

담당변호사 이은우, 남상철, 이상희, 김묘희, 노정연, 김기탁

피신고인 1. 메타 플랫폼스 잉크(Meta Platforms, Inc.)

1601 Willow Road

Menlo Park, CA 94025, USA.

대표자 마크 저커버그

2. Privacy Agent Korea Co., Ltd.(국내대리인)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02-737-0455, korealocalagent@support.facebook.com

대표이사 박춘희

3. 엑스 코프(X Corp.)

865 FM 1209, Building 2

Bastrop, TX 78602

대표자 린다 야카리노

4. 엑스코리아 유한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37층

korea_local_agent@x.com

대표자: 푸세이생윈스턴

신고의 요지

피신고인 메타 플랫폼스 인크 : 피신고인 1은 피신고인 1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2024. 6. 26.부터 이용자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함. 이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훈련한 모델을 피신고인이 서비스에 이용하고, 제3자에게도 배포함. 동의 철회의 요구 방법과 절차를 어렵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음.

피신고인 엑스 코프 : 피신고인 3은 피신고인 3이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엑스(X, 구 twitter) 서비스 이용자에게 알리지도 않고, 2023. 9. 29.부터 이용자의 X(구 twitter) 개인정보(민감정보 포함)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를 받는 등 적법한 근거 없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의 훈련 데이터로 이용함. 이와 같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로 훈련한 모델을 피신고인이 서비스에 이용하고, 2024. 11. 15. 부터는 제3자에게도 배포함. 동의 철회의 요구

방법과 절차를 어렵지 않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음.

피신고인 1, 3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8조의 8 제1항, 제37조 제6항,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41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함.

신고 사항

I. 위법행위의 요지

1. 피신고인 메타 플랫폼스 링크

피신고인 1은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2024. 6. 24. 부터 페이스북(Facebook)과 인스타그램(Instagram) 이용자들의 개인정보(포스팅, 좋아요 등 활동 정보, 가입자 정보 등)를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도 받지 않고, “피신고인과 제3자의 AI 학습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고, AI 서비스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은 이런 과격적인 행위가 피신고인의 ‘정당한 이익’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AI 학습 이용 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개인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에게 ‘AI학습과 AI 서비스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한다’는 사실도 별도로 알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처리 정지나 동의 철회를 할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기회도 가져 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페이스북(2019년 1,200만명, 2024년 840만명), 인스타그램 이용자(2024년 2,430만명)(단, 18세 미만 제외)의 최대 18년(2007년~2025년)에 걸쳐 축적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피신고인의 AI 학습 개인정보로 활용되

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피신고인 엑스 코프(X Corp.)

피신고인 3은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2023. 9. 29. 부터 X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이용자가 피신고인에게 제공하는 정보(개인 계정, 프로페셔널 계정, 결제 정보, 기본 설정, 생체 정보, 입사지원서/추천서 등), 이용자가 X를 사용할 때 피신고인이 수집하는 정보(사용 정보, 구매 및 결제, 디바이스 정보, 위치 정보, 추정된 신원, 로그 정보, 광고, 쿠키 및 유사 기술, 제3자 사이트에서 피신고인의 콘텐츠에 대한 반응), 피신고인이 제3자로부터 받는 정보(광고 파트너, 개발자, 퍼블리셔, 기타 제3자, 계정 연결 및 통합)) 등을 피신고인이 직접 AI 개발과 AI 서비스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Version 20: September 29, 2023](#)). 그리고 2024. 11. 15.부터는 제3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훈련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 2024. 11. 15.)¹.

피신고인 3은 이런 사실을 미리 이용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전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X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동의 철회권을 행사할 기회도 가져 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3.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신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8조의 8 제1항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국의 조사

¹ <https://x.com/ko/privacy>

피신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나 소비자 단체들은 신고를 하였고, 현재 각국에서 감독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지역에서는 피신고인 1의 행위에 대해 2024. 6. 6. 우리와 유사한 개인정보보호법제인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위반을 들어서 여러 소비자 단체들(NOYB, 노르웨이 소비자 협의회(Forbrukerrådet, The Norwegian Consumer Council))이 피신고인을 11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탈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의 개인정보감독기구에 신고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²

영국에서도 피신고인 1의 행위에 대해 2024. 7. 15. Open Rights Group이 영국의 ICO에 피신고인을 신고했습니다.³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도 소비자 단체의 신고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신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신고인 3의 행위에 대해 NOYB는 유럽 연합 9개국에 X를 신고하였고(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⁴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OPC)도 2025. 2. 27.자 보도자료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전자문서법(PIPEDA) 위반에 해당한다는 신고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⁵

² <https://noyb.eu/en/noyb-urges-11-dpas-immediately-stop-metas-abuse-personal-data-ai>

³ <https://www.openrightsgroup.org/press-releases/org-complaint-to-ico-about-meta-privacy-policy-changes/>

⁴ “Twitter의 AI 계획에 GDPR 불만이 9건 더 접수됨” <https://noyb.eu/en/twitters-ai-plans-hit-9-more-gdpr-complaints>

⁵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2025. 2. 27. “소셜 미디어 플랫폼 X에 대한 불만에 대한

II. 신고인과 피신고인들 및 이용자 개인정보 AI 모델 훈련 무단 이용

1. 신고인들

신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1998년에 설립된 정보인권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피신고인의 페이스북(/jinbonet), 인스타그램(@jinbonet), X (@jinbonet)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신고인 (사)정보인권연구소는 2018년 설립되어 정보인권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 연구소로 피신고인의 페이스북(/digitalrightskorea) 서비스 이용자입니다.

신고인 000은 피신고인의 페이스북(/xxxxxxx), 인스타그램(@xxxxxxx) 서비스의 이용자입니다.

신고인 000은 피신고인의 페이스북(/xxxxxxx) 서비스의 이용자입니다.

신고인 000는 피신고인의 페이스북(/xxxxxxx), 인스타그램(@xxxxxxx) 서비스의 이용자입니다.

신고인 000은 피신고인의 인스타그램(@xxxxxxx), X(@xxxxxxx) 서비스의 이용자입니다.

2. 피신고인들

피신고인 1은 앱 패밀리(Family of App, FoA)와 리얼리티 랩(RL)으로 구성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앱 패밀리에 포함되는 서비스(제품)으로는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Instagram), 메신저, 왓츠앱(WhatsApp) 등이 있습니다.⁶ 2023년 사업보고서에서 피신고인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Facebook. Facebook은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세상을 더 가깝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순간을 공유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논의하고, 관계를 키우고 구축하고, 관심사를 발견하고 연결하고, 경제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피드, 릴, 스토리, 그룹, 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⁷

Instagram. Instagram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사물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Instagram 피드, 스토리, 릴, 라이브, 메시징은 사람들과 크리에이터가 사진, 비디오, 비공개 메시징을 통해 연결하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장소이며, 좋아하는 업체를 발견하고 쇼핑할 수 있습니다.⁸

피신고인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페이스북의 2023년 12월 기준 일일 활성 사용자(DAU)는 전세계 21.1억명(아시아 태평양 9.1억명)이고, 월간 활성사용자(MAU)는 30.7억명(아시아태평양 13.7억명)입니다.⁹ 국내 앱 분석서비스에 의하면 2024년 한국의 페이스북 이용자는 840만명이고, 인스타그램 사용자는 2,430만 명이라고 합니다(2024. 3. 19. 경향신문)¹⁰

⁶ 미국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4년도 연례보고서(K-10)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26801/000132680125000017/meta-20241231.htm>

⁷ 위 보고서 7 페이지

⁸ 위 보고서 8 페이지

⁹ 위 보고서 68페이지

¹⁰ 국민 절반은 인스타그램을 한다...이용자 수 5년 만에 두 배로, 2024.03.19 배문규 기자
<https://www.khan.co.kr/article/202403191003001>

피신고인 2는 피신고인 1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 2에 의해 지정한 자(국내대리인)이며, 피신고인 1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물품, 서류 등 자료의 제출 업무를 대리하는 자입니다.

피신고인 3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인 X (구 트위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X 서비스는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2006년 7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했고, 한국에서는 2011년 1월부터 공식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신고인 3의 모회사인 X.AI LLC는 Grok이라는 이름으로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4는 X 서비스의 대한민국 내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된 자입니다.

3. 피신고인 1 -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하고 AI 학습과 AI 서비스에 무단 이용

가. 2024년 6월 26일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관련 내용 포함

피신고인 1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적용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¹¹에서 AI 관련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인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¹¹ <https://privacycenter.instagram.com/policy/version/25238980265745528/>
<https://www.facebook.com/privacy/policy/version/25238980265745528/>

저희가 회원님의 정보를 처리하는 이유 및 방법 ¹²	저희가 이용하는 정보 카테고리 ¹³
<p>Meta 제품 제공 및 개선: Meta 제품 제공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수집, 저장 및 관련된 경우 공유, 프로파일링, 검토, 관리, 경우에 따라 자동 처리는 물론, 수동 (인적) 검토가 포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희가 제공하는 인공 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동영상 등의 콘텐츠를 파악 및 생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이 제공한 정보*: 친구, 팔로워, 기타 연결 관계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 파트너, 벤더 및 기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p>사회적 공익을 위한 연구 및 혁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희는 인공 지능, 머신 러닝과 같은 분야의 연구를 지원합니다.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이 제공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회원님이 만드는 콘텐츠(예: 게시물, 댓글, 오디오)
- 회원님의 공개 프로필 정보(이름, 사용자 이름, 프로필 사진 포함)
- 회원님이 저희의 카메라 기능 또는 회원님의 카메라 를 설정 또는 저희의 음성 지원 기능을 통해 제공하는 콘텐츠
- 관련 법률에 따라 메시지의 콘텐츠를 비롯하여 회원님이 주고받는 메시지
- 관련 법률에 따라 콘텐츠 및 메시지에 관한 메타개인정보
- 회원님이 보거나 상호작용하는 콘텐츠의 유형 및 상호작용 방식
-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과 기능 및 회원님이 해당 앱과 기능에서 취하는 행동
- 잘린 신용카드 정보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구매 또는 기타 거래 정보
- 회원님이 사용하는 해시태그
- 회원님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활동 시간, 빈도, 기간

“회원님의 친구, 팔로워, 기타 연결 관계에 관한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¹² <https://privacycenter.instagram.com/policy/version/25238980265745528/>

¹³ “각 정보 카테고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를 참조하세요. 저희가 이용하는 실제 정보는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합니다.

- 저희는 친구, 팔로워, 그룹, 계정, Facebook 페이지 및 기타 회원님이 연결되고 교류하는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여기에는 회원님이 여러 Meta 제품에서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과 가장 자주 교류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연락처에 관해 수집하는 정보
- 또한 회원님이 연락처 정보(예를 들어 이름,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기기](#)에서 업로드 또는 가져오기로 선택하는 경우 해당 연락처 정보를 수집합니다.
- 회원님이 Meta 제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회원님의 정보는 수집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가 회원님에 관해 수집하거나 추론하는 정보
- 저희는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추론하기도 합니다. 예:
- 저희는 누군가가 업로드한 연락처 리스트에 회원님과 상대방이 둘 다 있는 경우 Facebook의 '알 수도 있는 사람' 기능을 통해 회원님에게 친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회원님에게 가입할 그룹을 추천할 때 회원님의 친구가 그 그룹에 속해 있는지도 고려합니다.

“앱, 브라우저, 기기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기기 특성 및 기기 소프트웨어
- 앱이 포어그라운드에 있는지,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는지(사람과 봇을 구분하는데 도움이 됨) 등 회원님이 기기에서 하는 활동
- 회원님의 기기를 다른 이용자의 기기와 구분하는 식별자
- 기기 신호
- 회원님이 회원님의 기기 설정을 통해 공유한 정보
- 위치 관련 정보
- 를 비롯하여 회원님의 기기를 연결한 네트워크 관련 정보
- 쿠키 및 유사 기술에서 얻은 정보

“저희가 수집 또는 제공받는 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저희는 파트너, 측정 벤더, 마케팅 벤더, 기타 제3자로부터 저희 제품 안팎에서 발생하는 회원님의 다양한 정보 및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받습니다.

회원님에 관해 저희가 제공받는 정보의 예시입니다.

- 회원님의 기기 정보
- 회원님이 방문하는 웹사이트와 쿠키 개인정보(예: 소셜 플러그인 또는 Meta 픽셀을 통해)
- 회원님이 사용하는 앱
- 회원님이 플레이하는 게임
- 회원님이 Meta가 아닌 결제 환경에서 저희 제품을 통해 처리하는 구매 및 거래 정보
- 회원님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예: 학력)
- 회원님이 조회한 광고 및 상호작용 방식
- 회원님이 저희 파트너의 제품 및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식(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파트너는 또한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쿠키, 광고 기기 ID와 같은 정보를 저희에게 공유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회원님이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회원님의 활동과 회원님의 계정을 매칭합니다.

저희는 회원님의 저희 제품 로그인 여부나 저희 제품의 계정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파트너는 또한 자신의 비즈니스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에게 지시하는 경우(예: 커뮤니케이션 관리 지원) 회원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저희와 공유합니다. 비즈니스에서 회원님의 정보를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해당 비즈니스의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읽어보거나 직접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 중 ‘생성형 AI’

피신고인은 별도로 찾아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라는 제목의 항목에서 생성형 AI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Meta가 생성형 AI 모델 및 기능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AI at Meta (생략)

생성형 AI란? (생략)

Meta가 학습에 사용할 정보를 얻는 방법

효과적인 모델 학습에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훈련에는 다양한 소스가 사용됩니다. Meta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정보를 사용하며, Meta 제품 및 서비스에 공유된 정보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게시물 또는 사진, 캡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회원님이 친구 및 가족과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메시지를 AI를 학습시키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회원님 또는 채팅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이 AI와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선택한 경우 제외). (중략)

개인정보 보호 및 생성형 AI

Meta는 AI 모델이 적절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사례별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학습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또한 Meta는 Meta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중략)

유럽 연합에서 저희는 AI at Meta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개 소스 및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스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도 Meta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러한 목적과 사람들이 Meta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유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AI at Meta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Meta AI에 사용되는 정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설명도 있습니다.

Meta AI에 사용되는 정보

Meta AI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정보는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됩니다. Meta가 사용하는 정보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Meta가 사용하는 정보

- 회원님의 전체 공개 정보
- 회원님의 AI 기능 상호 작용
- 기타 유형의 정보

한편, 전체 공개 정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고 합니다.

전체 공개 콘텐츠의 유형

(언제나 전체 공개되는 것) : 회원님의 정보와 활동 중 일부는 언제나 전체 공개됩니다.

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이름
- Facebook 및 Instagram 사용자 이름
- 프로필 사진
- 공개 그룹, Facebook 페이지 및 채널 내 활동
- 공개된 콘텐츠에 관한 활동 예: Marketplace 또는 공개 Instagram 계정에서 회원님의 댓글, 평가 또는 리뷰
- 아바타

(전체공개 설정 콘텐츠) : 전체 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기타 콘텐츠(예: 프로필에 게시한 게시물, 사진, 동영상, 스토리, 릴스).

- **회원님이 전체 공개로 공유하는 정보**: 전체 공개로 콘텐츠를 공유하면(예: 공개 대상 선택 도구에서 전체 공개 선택) 해당 콘텐츠가 전체 공개 정보로 간주됩니다. 또한 콘텐츠를 공유할 때 공개 대상 선택 도구나 다른 공개 범위 설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전체 공개 정보라는 뜻입니다.
- **다른 사람들이 공유하는 콘텐츠**: 다른 사람이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회원님이 직접 전체 공개로 공유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전체 공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전체 공개 게시물에 댓글을 남겼다면 해당 댓글도 함께 전체 공개됩니다.
- **Facebook 페이지나 공개 그룹의 게시물**: Facebook 페이지와 공개 그룹은 모두가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페이지나 그룹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회원님의 게시물이나 댓글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지나 공개 그룹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댓글을 남기면 다른 Facebook 내외의 공간과 피드에 소식이 게시될 수 있습니다.

다. 요약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정책을 요약하면, 피신고인은 AI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해 회원들의 '전체공개 정보'를 훈련 개인정보로 활용하겠다고 하면서, 그 근거는 피신고인에게 회원들의 전체공개 정보를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학습 데이터나 AI 서비스에 활용해도 무방한 '합법적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신고인은 이를 근거로 이용자들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4. 피신고인 3 -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하고 AI 학습과 AI 서비스에 무단 이용

가. 2023. 9. 29. 적용 개인정보처리방침에 AI 관련 내용 포함

피신고인 3은 2023. 9. 29. 적용 AI 관련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신고인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2. 당사가 정보를 이용하는 방식

2.1 서비스 운영, 개선 및 맞춤화

당사는 X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 당사가 수집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또한, 당사는 귀하에게 보다 관련성 높은 콘텐츠 및 광고를 보여주거나, 팔로우할 만한 사람 및 토픽을 추천하거나, 당사의 제휴사 또는 제3자 앱 및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귀하가 X에서 보다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고 맞춤화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합니다. 당사는 수집한 정보 및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본 정책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당사의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신고인 3은 아래와 같은 방대한 정보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피

신고인 3의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이용 거부를 선택하거나, 처리 정지를 선택할 수도 없도록 합니다.

피신고인 3이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할 수 있다는 이용자의 정보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고 소개합니다.

(i) 귀하가 당사에 제공하는 정보

1. 개인 계정
2. 프로페셔널 계정
3. 결제 정보
4. 기본 설정
5. 생체 정보
6. 입사지원서/추천서

(ii) 귀하가 X를 사용할 때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

- 사용 정보¹⁴
- 구매 및 결제

¹⁴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귀하가 게시하는 게시물 및 기타 콘텐츠(게시 일시, 앱, X 버전 포함)를 비롯하여 귀하의 생방송 활동(예: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귀하가 생성한 방송 및 해당 방송의 생성 일시 포함), 귀하의 리스트와 북마크 및 귀하가 속한 커뮤니티.
- 재게시, 마음에 들어요, 북마크, 공유, 답글 등과 같이 귀하가 다른 사용자의 콘텐츠에 보낸 반응, 다른 사용자가 콘텐츠에 귀하를 멘션하거나 태그하는지 여부 또는 귀하가 콘텐츠에 다른 사용자를 멘션하거나 태그하는지 여부, 귀하가 참여하는 방송(귀하의 시청 기록, 청취, 댓글, 발언 및 반응 포함).
- 귀하가 팔로우하는 사람 및 귀하를 팔로우하는 사람, 암호화된 쪽지와 관련된 메타데이터, 쪽지 내용, 받는 사람, 쪽지 날짜 및 시간 등 쪽지 사용 시기와 같이 귀하가 플랫폼에서 다른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
- 귀하가 이메일 등을 통하여 당사에 문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의 및 그 내용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당사는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 전반(당사가 귀하에게 발송하는 이메일 포함)에서 접속하는 링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 디바이스 정보¹⁵
- 위치 정보¹⁶
- 추정된 신원¹⁷
- 로그 정보¹⁸
- 광고¹⁹
- 쿠키 및 유사 기술²⁰

¹⁵ 당사는 귀하가 X에 액세스하는 데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 IP 주소, 브라우저 유형 및 관련 정보 등 인터넷 연결에 관한 정보.
- 기기 및 광고 ID, 운영체제, 통신사, 언어, 메모리, 설치 앱, 배터리 잔량 등 기기 및 그 설정에 관한 정보.
- 귀하가 당사에 공유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기기 주소록.

¹⁶ 귀하가 X를 사용할 때, 당사는 관련성 있는 광고의 게재를 포함하여 귀하가 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하의 대략적인 위치에 대한 일부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귀하는 계정 설정에서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귀하의 현재 정확한 위치 또는 귀하가 이전에 X를 사용한 장소를 공유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¹⁷ 우리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된 대로 귀하의 신원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신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특정 브라우저나 기기로 X에 로그인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브라우저나 기기를 귀하의 계정과 연결합니다. 귀하의 설정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X에 로그인하는 데 사용하는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 이외의 브라우저 또는 디바이스를 귀하의 계정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또는 귀하가 로그인한 디바이스 또는 브라우저를 다른 디바이스 또는 브라우저 또는 X에서 생성된 식별자에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 이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기타 정보를 X에 제공하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정보를 귀하의 X 계정과 연결합니다. 또한, 귀하의 설정에 따라, 당사는 귀하가 X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와 동일한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메일 주소들의 해시값을 귀하의 계정과 연결하는 방식 등을 통해 해당 정보를 귀하의 신원에 관한 다른 정보를 추정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귀하가 X에 접속하되 로그인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당사가 수집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귀하의 신원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¹⁸ 계정을 생성하지 않았거나 로그인한 상태일지라도 귀하가 당사의 제품 및 서비스에서 콘텐츠를 보거나 다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 IP 주소 및 관련 정보, 브라우저 유형 및 언어, 운영 체제, 참조 웹페이지, 액세스 시간, 방문한 페이지, 위치, 귀하의 이동통신사, 디바이스 정보(디바이스 및 애플리케이션 ID 포함), 검색어 및 ID(쿼리로 제출되지 않은 항목 포함), X에서 귀하에게 게재하는 광고, X에서 생성된 식별자, 쿠키와 관련된 식별자. 또한, 귀하가 X를 통해 다른 앱을 설치할 때 등 귀하가 당사의 서비스상의 링크를 클릭 또는 열람하거나 해당 링크와 상호 작용하는 경우, 당사는 로그 정보를 받습니다.

¹⁹ 귀하가 X 내외부에서 당사가 게재하는 광고를 보거나 반응할 때, 당사는 이러한 조회 또는 반응(예: 동영상 광고 또는 프리롤 시청, 광고 클릭, 광고의 재게시 또는 광고에 작성된 답글에 대한 반응)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²⁰ 많은 웹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당사는 쿠키 및 유사 기술을 사용하여 추가적인 웹사이트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고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당사 제품과 서비스의 많은 부분(예: 검색 및 공개 프로필 확인)에는 쿠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사에서 쿠키 및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3자 사이트에서 당사의 콘텐츠에 대한 반응²¹

(iii) 당사가 제3자로부터 받는 정보 ²²

- 광고 파트너, 개발자, 퍼블리셔²³
- 기타 제3자, 계정 연결 및 통합²⁴ .

나. 2024. 11. 15. 부터 AI 학습에 사용하도록 제3자에 제공

한편, 피신고인 3은 2014. 11. 15. 개정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제공하여, 인공지능 모델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피신고인 3은 이용자의 설정에 따라 이용자의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할 경우, 제3자와 공유한다고 하는데, 해당 설정은 이미 모두 허용한다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설정 화면을 찾아서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 공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의 문구에 의하면 정보수신자라는 제3자가 이

²¹ 귀하가 임베드된 타임라인이나 게시 버튼과 같이 X 콘텐츠가 통합된 제3자 웹사이트에서 당사의 콘텐츠를 볼 때, 당사는 귀하가 방문한 웹페이지가 포함된 로그 정보를 수신할 수 있습니다.

²² 귀하가 제3자의 온라인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제3자가 그러한 이용에 관한 정보를 당사와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²³ 당사의 광고 및 비즈니스 파트너는 브라우저 쿠키 ID, X에서 생성된 식별자, 모바일 기기 ID, 이메일 주소 등 해시된 사용자 정보, 인구 통계 또는 관심사 데이터,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조회한 콘텐츠나 수행한 작업과 같은 정보를 당사와 공유합니다. 또한 당사의 일부 광고 파트너, 특히 당사의 광고주는 자신의 웹사이트 또는 앱에 당사의 광고 기술을 통합하여 당사가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으로부터 직접 위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광고 파트너 및 제휴사들이 공유하거나 X가 광고 파트너 및 제휴사들의 웹사이트 또는 앱에서 수집한 정보는 귀하가 X와 공유하거나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다른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이 X가 귀하에 관하여 수령, 생성 또는 추정하는 기타 정보와 결합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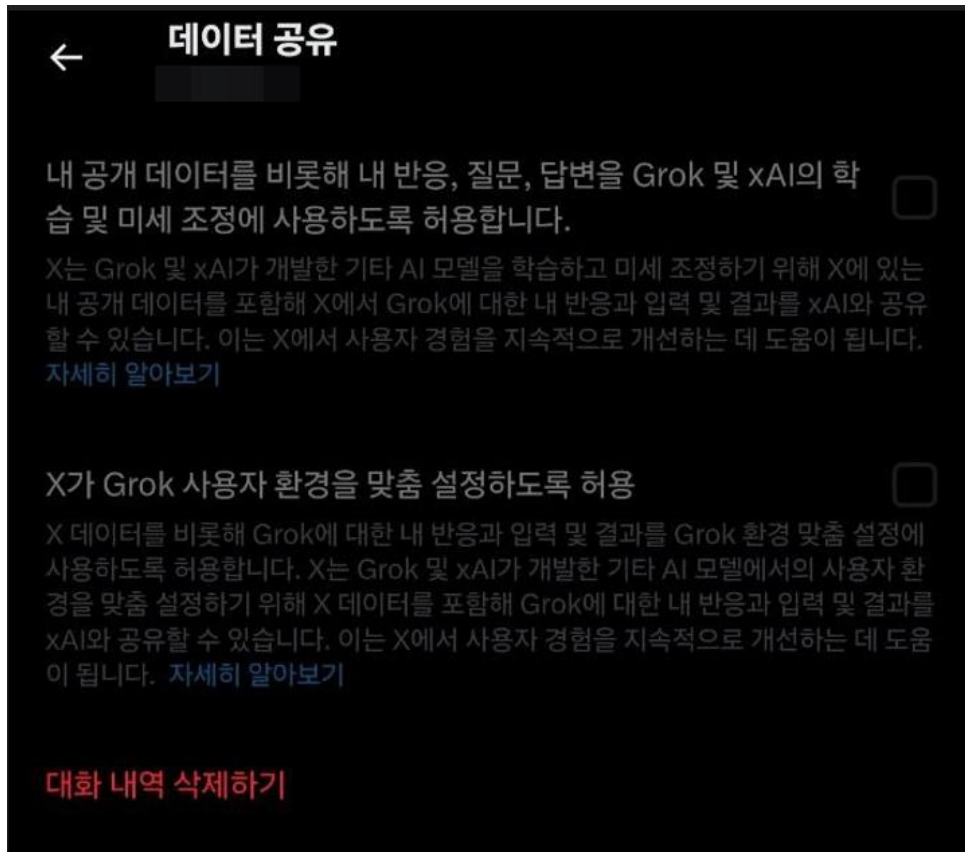
²⁴ 당사는 당사의 광고 파트너가 아닌 제3자(예: 다른 X 사용자, 개발자, 당사의 플랫폼상 콘텐츠의 안전성 또는 품질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파트너, 당사의 제휴사, 귀하가 귀하의 X 계정에 연결한 다른 서비스)로부터 귀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X 계정을 귀하의 다른 서비스 계정에 연결하도록 선택할 수 있으며, 해당 다른 서비스는 귀하의 해당 다른 서비스 계정에 관한 정보를 당사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용자의 개인정보로 인공지능 모델 훈련을 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것으로 취급될 것으로 보입니다.²⁵

제3자 파트너 귀하의 설정에 따라 또는 귀하가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는 귀하의 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거나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옵트아웃하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정보 수신자가 X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명시된 목적 외에도 자체적인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성적이든 아니든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실제로 설정 화면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맞춤형 서비스 및 데이터 모두 허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해당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²⁵ <https://x.com/settings/account/personalization>



다. 요약

피신고인의 개인정보 정책을 요약하면, 피신고인은 AI 모델 개발과 활용을 위해 회원들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훈련 데이터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며,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동의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도 제공할겠다는 것인데, 제3자 제공 동의를 한 것처럼 취급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III. AI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의 법적 근거

1. AI 시스템과 AI 모델

가. 개요

AI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과 적응성을 가지고 주어진 목표를 위하여 실제 및 가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 추천, 결정 등의 결과물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제2조 제1호 제2호).²⁶로 정의합니다. 한편, 'AI 모델'은 AI 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이지만 그 자체로 AI 시스템을 구성하지는 않습니다. AI 모델이 AI 시스템이 되려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같은 추가 구성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에 통합되어 AI 시스템의 일부를 형성합니다.’

나. AI 모델과 개인정보

AI모델이나 AI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양상은 다양한데, 각 과정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i) 개인정보를 AI 모델의 학습에 훈련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단계입니다.²⁷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훈련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합니다.

(ii) 이와 같이 훈련한 AI 모델을 배포,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그 AI 모델이 학습한 개인정보를 식별 가능하도록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면 역시 개인정보 보호 이슈가 있습니다.²⁸ 기존 연구 출판물은 AI 모델에 존재할 수 있

²⁶ 은 ‘AI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고 배포 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암시적 목표에 대해 수신된 입력에서 예측, 콘텐츠, 결과와 같은 출력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기계 기반 시스템입니다.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장 사항 또는 결정’

²⁷ AI 모델의 강화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²⁸ EDPB는 AI 모델이 훈련 데이터에서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정보를 생성하

는 잠재적인 취약성을 강조하며, 이로 인해 개인 데이터가 처리될 수 있으며, 모델이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또는 "프롬프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다른 데이터와 함께 사용되도록 배포될 때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데이터 처리도 강조합니다.²³²⁹

(iii) AI 시스템 이용단계에서 개인정보가 투입되거나 활용되는 경우도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있습니다. (iv) AI 시스템 이용단계에서 AI 모델이 개인을 추론하거나, 평가하는 결과물을 산출하는 경우도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있습니다.

다. 피신고인 1, 3의 AI 모델

피신고인들은 어디에서도 피신고인 1,3이 개발, 기능을 제공하려는 AI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³⁰

예를 들어 피신고인 1은 “Meta가 생성형 AI 모델 및 기능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항목에서 ‘생성형 AI’의 ‘효과적인 모델 학습’ 또는 ‘훈련’, 또

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훈련 데이터 세트의 정보가 모델의 매개변수에 '흡수'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수학적 객체를 통해 표현됩니다. 원래 훈련 데이터 포인트와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델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추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해당 데이터의 원래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된 개인 데이터가 식별되었거나 식별 가능한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합리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수단을 통해 AI 모델에서 얻을 수 있는 경우 해당 모델은 익명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²⁹ 같은 맥락에서, 훈련 데이터 추출에 대한 연구는 특히 역동적입니다²⁴. 이는 어떤 경우에 일부 AI 모델에서 개인 데이터를 추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단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AI 모델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우연히 개인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예: AI 시스템의 일부로). 이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은 주어진 사례에서 개인 데이터의 역류²⁵ 및 추출의 잔여 위험을 더욱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³⁰ 한편, 피신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AI 시스템이란 용어는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나, OECD의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의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AI 시스템은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서 배포 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목적을 위해 수신한 입력을 통해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 등의 산출물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의 경우, ‘인공지능법’(AI Act)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는 ‘기능’을 위해, 또는 ‘AI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겠다고만 밝히고,³¹ 피신고인 3은 ‘당사의 기계학습 또는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만 밝힐 뿐입니다.

다만 피신고인 1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연례 사업보고서 (Form 10-K)³²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AI 투자는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여 앱의 콘텐츠 순위를 매기는 시스템,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는 디스커버리 엔진, 광고주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새로운 생성 AI 경험 개발, 제품 개발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만드는 도구에 동력을 제공합니다.”라고 설명하고(7페이지), ‘기술’에 대한 설명 부문에서도 “우리는 생성 AI를 포함한 AI 이니셔티브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AI 기반 검색 엔진을 통해 제품 전반에 관련 콘텐츠를 추천하고, 광고 도구를 개선하고, 광고 전달, 타겟팅, 측정 기능을 개선하고, 기존 제품에 대한 새로운 기능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9페이지).

이를 통해서 피신고인들이 개발, 활용하려는 생성 AI가 ① 관련 콘텐츠 추천에 활용하는 것과, ② 광고 도구를 개선하고, 광고 전달, 타겟팅, 측정 기능을 개선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를 ‘생성형 AI’의 ‘모델 학습’ 또는 ‘훈련’ 또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 또는 ‘Meta AI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가 무엇인지,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 AI 모델 개발, 서비스에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³¹ <https://www.facebook.com/privacy/dialog/information-used-for-ai-at-meta>

³²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326801/000132680124000012/meta-20231231.htm>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 AI 시스템의 모델 학습 단계와 AI 시스템 활용 단계

피신고인들은 개인정보를 ‘AI 모델 학습’ 또는 ‘훈련’에 사용한다고 하거나, ‘Meta가 생성형 AI 모델 및 기능을 위해 정보를 사용’한다거나, ‘Meta AI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하에서는 통상적인 의미에서, AI 모델 학습이나 훈련, AI 활용에서 개인정보 활용으로 보고 검토합니다.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의 개발, 활용은 (i) AI 모델 학습 또는 훈련단계와 (ii) AI 모델의 활용 단계라는 별도로 구별되는 2개의 단계로 나누어서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인공지능(AI)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이하 AI 개발, 서비스 안내서)³³, CNIL의 ‘AI와 GDPR 준수’(2022. 9. 21.)³⁴, 영국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인 ICO의 ‘AI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³⁵ 등은 두 단계를 (i) ‘학습’과 ‘서비스’로 부르거나, (ii) ‘훈련’(training)과 ‘배포’(deployment)로 부르거나, (iii) ‘개발’(development)과 ‘배포’(deployment) 단계로 부릅니다.

이와 같이 나눌 수 있는 두 단계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나 처리 방식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각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법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³³ AI 학습 단계와 AI 서비스 단계로 구분합니다(9페이지).

³⁴ <https://www.cnil.fr/en/ai-ensuring-gdpr-compliance>

³⁵ ICO의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가이드라인 참조, <https://ico.org.uk/for-organisations/uk-gdpr-guidance-and-resources/artificial-intelligence/guidance-on-ai-and-data-protection/>

나. AI 시스템의 모델 학습(개발) 단계나 AI 시스템 활용 단계에서의 개인정보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제2조 제2호)에 해당

피신고인들이 개발, 활용하겠다는 생성형 AI 모델은 ‘범용 AI 모델’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범용 AI 모델은 ‘사전 훈련³⁶’, ‘미세 조정³⁷’, ‘시스템 통합³⁸’, ‘배포³⁹’ 및 ‘배포 후 업데이트⁴⁰’라는 일련의 단계를 거쳐 개발되고 배포됩니다(발전된 AI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과학보고서, 2.1)⁴¹.

이런 단계를 거치는 AI 시스템의 모델 학습(개발) 단계와 활용(deployment)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도식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ICO). 수집 → 전

³⁶ 위 보고서, 사전 학습의 목적은 범용 AI 모델에 일반적인 배경 지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전 학습 중에 범용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가져온 것)의 패턴에서 학습합니다. 사전 학습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은 대규모 작업이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 학습은 개발에서 가장 계산 집약적인 단계입니다. 현재 범용 AI 모델의 사전 학습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고 수천 개의 그래픽 처리 장치(GPU)를 사용합니다. GPU는 복잡한 병렬 계산을 빠르게 처리하도록 설계된 특수 컴퓨터 칩입니다.

³⁷ 위 보고서, 사전 훈련 후, 대부분의 범용 AI 모델은 의도한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추가 미세 조정 단계를 거칩니다. 미세 조정에는 바람직한 예제에서 학습, 바람직한 예제와 바람직하지 않은 예제의 쌍, 보상과 처벌로부터의 학습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에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인적 개입이 필요하며, 현대 모델을 미세 조정하려면 수백만 건의 인적 피드백이 필요하므로 훈련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부분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종종 이러한 피드백은 수천 명의 계약 지식 노동자가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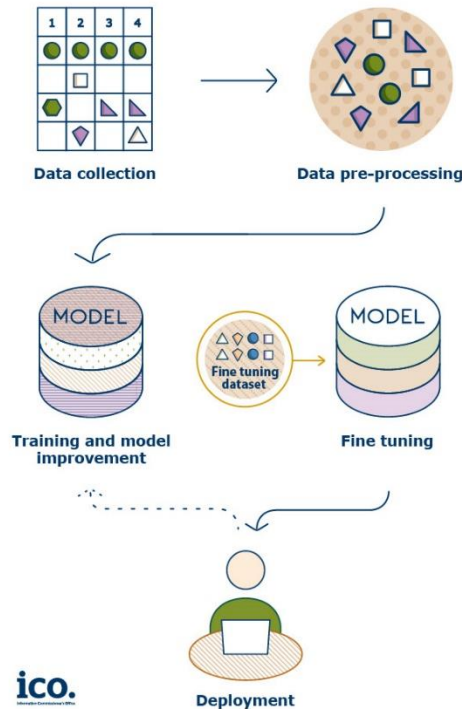
³⁸ 위 보고서, 모델을 훈련한 후에는 기능과 안전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와 통합하여 범용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용 AI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입력 전처리, 출력 후처리 및 콘텐츠 필터와 통합됩니다.

³⁹ 위 보고서, 모델을 훈련한 후에는 사용을 위해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는 개발자만 시스템을 사용하는 '내부' 배포이거나, 대중이나 개발자가 아닌 다른 엔터티가 사용할 수 있는 '외부' 배포일 수 있습니다. 외부 배포는 '폐쇄형 소스' 또는 '오픈 소스'일 수 있습니다. 폐쇄형 소스는 대중이 제한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픈 소스는 모든 모델 매개변수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GPT-4와 같은 일부 최첨단 범용 AI 시스템은 폐쇄형 소스인 반면 Llama-3과 같은 다른 시스템은 오픈 소스입니다.

⁴⁰ 위 보고서, 많은 범용 AI 시스템은 배포 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는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발견되는 결함과 취약성을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종종 개발자가 새로 발견된 취약성에 대응하여 주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게임에 해당합니다.

⁴¹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nternational-scientific-report-on-the-safety-of-advanced-ai/international-scientific-report-on-the-safety-of-advanced-ai-interim-report>

처리 → 훈련 → 모델 개발 → 미세조정 → 전개와 → 다시 미세조정의 단계를 거치는 예시입니다⁴².



이런 과정을 거칠 때, AI 시스템의 모델 학습(개발) 단계와 AI 시스템 활용 단계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⁴³에 해당할 것입니다. ICO는 “AI 시스템의 개발 및 배포에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간한 ‘AI 개발·서비스 안내서’도 (i) AI 시스템의 개발 단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수집, 저장, 가공(토큰화 등 전처리) 등을 수반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고, (ii) AI 서비스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포함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개인에 관한 결과값을 제공받을 수 있고, 프롬프트 입력 및 결과값은 다시 AI 학습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⁴² 영국 ICO의 인공지능과 데이터 보호, <https://ico.org.uk/about-the-ico/what-we-do/our-work-on-artificial-intelligence/generative-ai-first-call-for-evidence/>

⁴³ 제2조(정의)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점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9페이지). CNIL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필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의 개발(모델 학습)과 활용을 위해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리의 적법한 근거(제15조, 제17조, 제18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는 처리의 적법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⁴⁴ 피신고인의 AI 학습, 활용과 관련하여 적법한 처리 근거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i)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제1항 제1호), (i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6호), (iii)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제3항)를 들 수 있습

⁴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3. 3. 1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은 그 중에서 제6호인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생성형 AI

유럽 연합에서 저희는 AI at Meta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개 소스 및 라이선스가 부여된 소스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사용합니다. 한국에서도 Meta는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러한 목적과 사람들이 Meta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공유한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여 AI at Meta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IV. 피신고인 1, 3의 AI 모델 개발,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특징

1. 정의되지 않은 “인공지능 기술”에 사용⁴⁵

피신고인 1, 3은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인공지능 기술', AI 시스템의 개발, 기능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힐 뿐, 구체적으로 활용할 ‘인공지능 기술이 무엇인지’, ‘AI 시스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AI 시스템’은 매우 광범위하고, 발전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적과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특

⁴⁵ NOYB 신고서 6페이지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⁴⁶

2. 개인정보 유형에 따른 제한 없음

피신고인 1, 3은 현재 AI 시스템을 교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양이나 유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⁴⁷ 오히려, 피신고인 1, 3은 사용자의 서비스 내의 정보는 물론이고, 제3자로부터의 정보, 공개된 정보 등과 결합하여 교육에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특정 목적"에는 제한이 없음

피신고인은 단순히 “AI 시스템의 개발” 자체를 처리 목적으로 선언하므로 향후 이러한 AI 시스템이 사용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NOYB는 다음의 AI 시스템이 모두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봇, 불법 행위 등을 탐지하는 AI 시스템(보안)
- 사용자가 상호 작용하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AI시스템(“어시스턴트”)

⁴⁶ Meta가 생성형 AI 모델 및 기능을 위해 정보를 사용하는 방식

AI at Meta

Meta는 생성형 AI 경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 세계 Meta 제품 전반에서 더 많은 사람과 비즈니스에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Meta AI, AI 크리에이티브 도구와 같은 생성형 AI 기능 및 경험의 컬렉션인 AI at Meta와 이러한 기능 및 경험을 지원하는 모델을 함께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 개발자 및 커뮤니티의 다른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방형 플랫폼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델도 만들고 있습니다.

AI at Meta는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욱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채팅에 실시간 답변을 가져오는 것부터 사람들이 다음 휴가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고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것까지 AI at Meta는 사람들의 일상 활동과 경험, 소중한 순간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Meta는 책임감 있게 AI at Meta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⁴⁷ Meta가 학습에 사용할 정보를 얻는 방법

효과적인 모델 학습에는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훈련에는 다양한 소스가 사용됩니다. Meta는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와 라이선스가 부여된 정보를 사용하며, Meta 제품 및 서비스에 공유된 정보도 사용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게시물 또는 사진, 캡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략) Meta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또는 다른 제공업체의 라이선스가 부여된 정보를 수집하여 Meta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런 정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략) 회원님이 저희 제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계정이 없더라도 저희는 Meta AI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해 회원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AI시스템('사진 필터')
- 뉴스피드에서 더 관련성 높은 정보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AI시스템('개인화')
- 외부신용평가회사를 위한 AI 시스템("신용 순위")
- 기업이 채용 결정을 내릴 수 있는 AI 시스템('자동화된 의사결정')
- 광고주가 사용자의 약점을 활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심리 광고')
- 정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AI 시스템('정치적 영향력')
- 정부가 미래의 잠재적 범죄자를 찾아낼 수 있는 AI 시스템
- AI 시스템은 자율주행차뿐만 아니라 군용 드론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피신고인 1, 3은 “개인정보 처리 기술 전체를 '목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목적의 명확화를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⁴⁸

4. 시간 제한 없는 개인정보 사용

피신고인 1, 3은 훈련 개인정보의 생성 시기를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피신고인 1, 3은 "휴면" 계정의 개인정보조차도 훈련 개인정보의 소스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피신고인 1, 3은 수년간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주체로부터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 재활용”). 해당 정보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5. 개인정보의 익명화 또는 가명화 금지

피신고인 1, 3은 개인정보를 익명화하거나, 가명화하는 것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먼저 익명화

⁴⁸ NOYB 신고서 8페이지.

또는 가명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피신고인 1, 3은 (모든 AI 모델에 포함될) 개인정보의 사용을 피신고인 1, 3의 내부 사용 또는 내부 제품 내 사용으로 제한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NOYB는 이를 “40억 명의 메타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Meta의 AI 시스템을 통해 “세상 누구”,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⁴⁹

7.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 동의자와 비동의자(처리중지요구자)의 정보 분리 불가능

피신고인 1, 3의 AI 시스템 관련 정보 처리에서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의 분리나 구분이 불가능한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민감정보도 그것이 ‘민감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해당 민감정보로 인해서 그와 결합된 비민감정보를 포함한 전체 정보가 ‘민감정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민감정보는 처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민감정보’와 ‘비민감정보’를 분리할 수 없는 피신고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것은 여러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⁵⁰ 소셜미디어의 특성상 ‘동의자’의 정보와 ‘비동의자’의

⁴⁹ NOYB 신고서 9페이지.

NOYB는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처리 작업에 대한 Meta의 설명에는 개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Meta는 AI 기술에 대한 현재의 과대 광고와 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 처리 작업을 “속여 넘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 Meta는 (Meta 또는 제3자에 있는) 모든 개인 개인정보가 어떤 목적으로든(단순히 “AI”를 “특정 목적”으로 선언함으로써), 시간 제한 없이, 익명화 또는 가명화 없이, 잠재적으로 이 시스템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사람 전 세계 누구와도 공유되어 사용하는 것을 예상합니다.”

⁵⁰ NOYB 신고서 10 페이지

정보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중대한 문제입니다.⁵¹

8. 개인정보는 처리 중지를 요청해도, 한번 학습 개인정보로 이용되면 AI 시스템에서 삭제되지 않음

AI 시스템에서는 일단 입력된 개인정보는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없습니다. 피신고인은 “일단 AI 시스템에서 학습을 시작하는 경우, 향후 어떠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이미 훈련받은 개인정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V. 피신고인 1, 3은 모두 AI 학습과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그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지도 않습니다.

피신고인 1, 3은 모두 AI 학습과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그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만약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는 각각의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고,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

⁵¹ NOYB 신고서 9~10 페이지

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⁵²

한편, 피신고인 1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AI at Meta를 개발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피신고인 1이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AI 개발과 활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I. 피신고인들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의 개발, 활용에 이용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개인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

가. 법률의 규정

⁵² 동의에 의지할 수 있는가?

귀하가 처리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소유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동의가 적절한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는 자유롭게, 구체적, 정보에 근거하여, 모호하지 않게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 측에서 명확한 긍정적 행동을 포함해야 합니다.

동의를 장점은 개인이 귀하의 서비스를 사용할 때 더 많은 신뢰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통제권을 제공하는 것도 DPIA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적용하려면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정한 선택권을 가져야 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로 무엇을 하려는지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것과 같이 더 복잡한 처리 작업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로 무엇을 하려는지 많을수록 동의가 진정으로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한지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핵심은 개인이 귀하가 개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이러한 사용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을 탐색하기 위해 광범위한 기능을 수집하려는 경우, 개인에게 이러한 활동에 대해 알리고 유효한 동의를 얻는다면 동의가 적절한 합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를 AI 시스템을 배포하는 동안 개인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데 대한 적절한 합법적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예: 서비스 개인화, 예측 또는 추천 등의 목적).

그러나 동의가 유효하려면 개인이 동의를 한 것만큼 쉽게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배포 중에 AI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준으로 동의에 의존하는 경우(예: 개인화된 콘텐츠를 구동하기 위해) 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i)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정당한 이익), (ii) 필요한 경우로서(필요성), (iii)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법익의 균형)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 처리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리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진 제한이어야 한다고 하는데,⁵³ 이때 정당성, 필요성(침해의 최소성), 법익 균형을 검토하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헌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i)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ii) 침해의 최소성(필요성), (iii) 법익의 균형성을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23. 10. 26. 선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등 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 등 위헌확인])⁵⁴

나. 이익의 정당성

⁵³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와 같이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참조)”

⁵⁴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i)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ii) ‘침해의 최소성’, (iii)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항목으로 검토합니다.

‘이익’⁵⁵의 정당성은 ‘정당한 이익’의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처리자에게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처리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⁵⁶ 이익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누적적으로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⁵⁷

- 해당 이익은 합법적(lawful)이어야 합니다.
- 이익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합니다(clearly and precisely articulated.). 즉,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지는지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익은 실제적이고 현존해야 하며, 추측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real and present, and not speculative).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CJEU)는 “적법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 날짜에 존재하고 유효해야 하며 해당 날짜에 가 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⁵⁸

다. 처리의 필요성(침해의 최소화)

‘정당한 이익’을 위한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침해의 최소화과 같은 개념입니다.

⁵⁵ EDPB 지침(1/2024) 정당한 이익(GDPR 6(1)(f))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이하 ‘EDPB 지침(1/2024), 7 페이지. “이익과 목적(GDPR 제5(1)(b))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만 별개”라고 합니다. "목적"은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구체적인 이유, 즉 개인정보 처리의 목표 또는 의도입니다. 반면 "이익"은 처리자 또는 제3자가 특정 처리 활동에 참여하면서 가질 수 있는 더 넓은 이해관계 또는 이익입니다. 예를 들어 컨트롤러는 제품 홍보에 대한 이익이 있을 수 있고, 이 이익은 다이렉트 마케팅 목적으로 개인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⁵⁶ CJEU, judgment of 7 December 2023, Joined Cases C-26/22 and C-64/22, SCHUFA Holding (Libération de reliquat de dette) (ECLI:EU:C:2023:958), para. 75. EDPB 지침(1/2024), 6페이지.

⁵⁷ EDPB 지침(1/2024), 8 페이지

⁵⁸ CJEU, judgment of 11 December 2019, Case C-708/18, Asociația de Proprietari bloc M5A-ScaraA (ECLI:EU:C:2019:1064), para. 44.

EDPB는 지침에서 ‘필요성은 해당 처리로 정당한 이익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 외에도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합니다.⁵⁹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평가하려면 실제로 추구하는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 경우 해당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CJEU는 처리 필요성과 관련된 조건을 GDPR 제5조(1)(c)에 규정된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합니다.⁶⁰ 그리고 "확인된 정당한 이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61,62}

이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제16조 제1항과 제3조 제6항에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필요성 즉, 최소 침해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라. 이익형량

이익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처리의 필요성을 분석하는 것 외에도 처리자는 이익형량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익형량시 고려되는 사항은 다음과

⁵⁹ EDPB 지침(1/2024), 12 페이지

⁶⁰ CJEU, 2023년 7월 4일 판결, Case C-252/21, *메타 v. 연방 카르텔 사무국* (ECLI:EU:C:2023:537). 109; CJEU, 2019년 12월 11일 판결, Case C-708/18, *Asociația de Proprietari bloc M5A-ScaraA* (ECLI:EU:C:2019:1064), 단락. 48; CJEU, 2024년 10월 4일 판결, Case C-621/22, *왕립 네덜란드 잔디 테니스 협회* (ECLI:EU:C:2024:857), paras. 42-43 및 51-52.

⁶¹ CJEU, judgment of 7 December 2023, Joined Cases C-26/22 and C-64/22, *SCHUFA Holding (Libération de reliquat de dette)* (ECLI:EU:C:2023:958), para. 88; CJEU, judgment of 4 July 2023, Case C-252/21, *Meta v. Bundeskartellamt* (ECLI:EU:C:2023:537), para. 126.

⁶² EDPB 지침(1/2024), 12 페이지

같습니다.⁶³

- i)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및 자유.
- ii) 다음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처리의 영향
 - ①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 ② 처리의 맥락, 그리고
 - ③ 처리로 인한 후속 영향.
- iii)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
- iv) 추가 위험 완화 수단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반대되는 권리와 이익의 최종
형량.

(1)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및 자유

정보주체의 기본 권리와 자유에는 처리에 의해 직간접적(위축 효과를 통한 영향 포함)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재산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기타 기본 권리 및 자유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주체의 이익에는 재정적 이익, 사회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관련 처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이 포함됩니다. 이익을 포함하는 것은 권리보다 더 넓은 범위라는 것입니다.

(2)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의 영향

처리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본 권리와 이익을 확인한 후 처리자는 처

⁶³ EDPB 지침(1/2024), 13 페이지

리가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⁶⁴ 이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리가 정보주체에 미치는 영향(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원인, 해당 개인에 대한 영향의 심각성 및 그러한 영향이 실현될 가능성⁶⁵)은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 상황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⁶⁶

(3)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정보주체가 더 개인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정보 유형(예: 재무 개인정보, 위치 개인정보 등)인지, 아니면 보다 공개적인 성격을 지닌 개인정보 유형(예: 자신의 직업적 역할에 대한 개인정보)인지 영향을 평가할 때 검토될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이 더 민감하거나 사적인 것일수록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가 정보 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경우 이익형량에서 정보주체의 이익보호 필요성이 더 높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합니다.⁶⁷

이와 관련해서 특히 문제되는 것의 하나가 ‘민감정보’입니다. 우리나라 법제상

⁶⁴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처리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에 의한 미래의 잠재적인 결정이나 조치, 처리가 개인에 대한 배제나 차별, 더 넓게는 평판, 협상력,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자율성 침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등.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 외에도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짜증, 두려움, 괴로움과 같은 더 광범위한 감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터넷 노출 등을 통해 오용되거나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추적으로 인해 연구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보호받는 행동이 위축되는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⁶⁵ 29조 작업반 의견(06/2014) 지침 95/46/EC 제7조 개인정보 컨트롤러의 정당한 이익 개념에 대하여, 36 페이지.

⁶⁶ EDPB 지침(1/2024), 14 페이지.

⁶⁷ 그러나, 이는 덜 민감해 보이는 개인정보가 GDPR 6(1)(f)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개인정보 처리의 영향도 처리가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인해 중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EDPB 지침(1/2024), 14 페이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는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처리가 허용됩니다(제23조 제1항).

‘EDPB 가이드라인’도 정당한 이익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 즉,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한 취급을 강조합니다. 즉,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는 GDPR 제9조에 따라 추가 보호를 받으며,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민감한 개인정보”)의 처리는 GDPR 제9(2)조에 명시된 특정 추가 조건⁶⁸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수 범주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하나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세트는 전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되고, 특히 수집 시점에 개인정보 항목을 서로 분리

⁶⁸ (a) 정보주체가 단일 또는 복수의 특정한 목적으로 특별 범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 명백한 동의를 제공한 경우. 단,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 정보주체가 제1항의 금지조항을 무효화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b) 고용, 사회보장, 사회보호법 분야에서 컨트롤러나 정보주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특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단, 그 처리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이나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규정하는 회원국 법률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c) 정보주체가 신체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동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생명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처리가 필요한 경우 (d)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또는 노동조합의 목적을 지닌 재단, 협회, 기타 비영리기관이 적절한 안전조치를 갖추어 수행하는 합법적인 활동의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처리가 그 목적에 맞게 관련 기관의 회원 또는 이전 회원 또는 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접촉하는 자에 한하여 이루어지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기관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 (e) 정보주체가 명백히 공개한 개인정보와 관련된 처리인 경우 (f) 법적 권리의 확립, 행사, 방어를 위하거나 법원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마다 처리가 필요한 경우 (g) 추구하는 목표에 비례하도록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상당한 공익상의 이유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와 개인정보 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하고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는 경우 (h) 예방의학 또는 직업의학의 목적으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및 피고용인의 업무능력 평가, 의학적 진단, 의료서비스 또는 사회복지 또는 치료의 제공, 또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거나 의료전문가와 의 계약에 의거하고 제3항의 조건 및 안전조치에 따라 의료 또는 사회복지 제도나 서비스의 관리를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i) 회원국 간의 중대한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거나 의료서비스·의약품·의료장비의 높은 품질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에서 공익상의 이유로, 특히 직무상의 기밀 등 정보주체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처리가 필요한 경우 (j) 추구하는 목적에 비례하고, 개인정보 보호권의 본질을 존중하며, 정보주체의 기본적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제공하는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 법률에 근거하여, 제89조(1)에 따라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 또는 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적 목적을 위해 처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없는 상태로 일괄 수집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가 민감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유추하거나, 공개하는 것일 경우 그 개인정보는 민감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도 강조합니다. 해당 처리 작업에서 공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설사 처리자의 의도는 민감정보 범주에 속하는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었더라도, 처리된 개인정보에서 민감정보를 추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민감정보 처리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처리의 맥락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구체적인 상황과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이 어떤지에 따라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특정 처리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DPB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 **처리 규모 및 처리할 개인정보의 양**(전체 개인정보 양, 개인정보 주체당 개인정보 양,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주체 수 측면에서),
- **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관계**
- **처리할 개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 세트와 결합되는지 여부**
- **처리할 개인정보의 접근성 및/또는 공개 정도,**
- **개인정보 주체의 상태(예: 취약한 개인)**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양이 방대할수록, 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관계에서 정보 주체가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예측되었던 것이 아닐수록,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되거나, 생성되는 것일수록 정당한 이익의 범위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처리로 인한 후속 영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자유 및 이익에 추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되는 처리의 결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상황과 성격에 따라 처리자가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처리자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향후 잠재적인 결정이나 조치
- 개인정보 주체에 관한 법적 효과 발생 가능성
- 개인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
- 명예훼손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는 명예, 정보주체의 협상력이나 자율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상황
-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
-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 자연인의 자유, 안전,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외에도, 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잃거나 개인 정보가 오용되거나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정서적 영향도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추적 또는 식별 위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연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같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행동에 대한 냉각 효과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플랫폼에서 온라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면 개인정보 주체의 사생활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처리가 정보주체의 권리, 자유 및 이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고려해야 합니다. 다수의 정보 주체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 그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예:

비디오 감시 영역). 그러나 처리 작업이 더 침해적일수록 평가에 더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

자신의 정당한 이익과 정보주체의 이익 또는 기본권과 자유를 평가할 때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보 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는 균형 테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정보 주체가 처리나 그 결과 또는 함의로 인해 지나치게 놀라는 위험을 제한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EDPB는 “합리적인 기대라는 개념과 특정 부문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간주되는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즉, “특정 유형의 개인정보가 특정 부문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 반드시 개인정보 주체가 그러한 처리를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한이 허용되는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기본권 주체인 정보주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EDPB는 “합리적인 기대는 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반드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EDPB는 이와 관련해서 “정보의 누락은 개인정보 주체가 특정 처리에 대해 놀라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GDPR 12조, 13조, 14조에 명시된 정보 의무를 단순히 이행하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주체가 합리적으로 후속 처리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제공 의무를 이행했다는 것만으로 정보주체의 ‘합리적 기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침해해도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EDPB는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보주체와 처리자의 기본권의 이익형량의 일반적인 고려사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 또는 서비스와의 관계의 특징: 정보주체와의 관계 존재 자체(예: 관계가 종료된 날짜를 고려하는 것을 포함하여, 고객과 비고객을 구별해야 함,) 관계의 근접성(예: 처리자가 하나의 단일 브랜드를 가진 회사 그룹의 일부인 경우와 일반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유대만 가진 회사 그룹의 경우. 후자의 경우 개인정보 주체가 그룹 법인 간의 개인정보 공유를 합리적으로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음), 개인정보 수집의 장소와 맥락(예: 개인정보 주체는 은행에 CCTV가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으나, 위생 시설이나 사우나 시설은 기대할 수 없음), 서비스의 성격과 특성(예: 일반 고객과 뉴스레터만 구독하는 단순한 잠재 고객은 서로 다른 합리적인 기대치를 갖고 있음), 관련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법적 요구 사항(예: 관련 관계에서 고객에 대해 기밀을 지킬 것이 요구되는 관계)
- 개인정보를 처리할 "평균" 개인정보 주체의 특성. 균형 테스트에서는 처리가 다른 특성을 가진 여러 개인정보 주체 그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는 한 "평균" 개인정보를 주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 그 외에도 정보주체의 연령(미성년자의 합리적인 기대치는 성인의 기대치와 다를 수 있음), 정보주체가 공인인 정도, 개인정보 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위와 특정 상황에서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처리에 대한 이해 및 지식 수준.

(7) 이익 균형 테스트 -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정당한 이익에 의한 처리가 인정될 지 여부에서는 이익균형 테스트를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를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평가할 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비교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취하는 것도 고려하되, 명백하게 처리자의 이익이 우선하지 않다면 정당한 이익에 의한 처리가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범위를 제한한 것은 단순히 범위 뿐만 아니라, 처리의 방법이나 안전조치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치는 ‘상당한 관련성과 범위가 당연히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넘는 조치이어야 할 것입니다. EDPB도 완화조치는 “GDPR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것 이상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DPR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 조치 이상의 추가 보호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 완화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8) 이익형량의 입증책임

이익형량의 입증책임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의 단서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정보처리자가 수행하려는 개인정보처리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도 입증할 의무는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EDPB도 입증책임이 처리자에게 있다고 봄니

다.

2. ‘피신고인 1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요약 - 피신고인 1의 AI 훈련 목적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은 ‘정당한 이익’의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함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i) 정당한 이익, (ii) 필요성, (iii) 이익형량의 평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2024. 6. 26. 정책은 3단계 테스트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i)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정당한 이익으로 보기도 어렵고, (ii) 처리할 개인정보 대상도 제한하지 않고, 익명화, 가명화도 없고, 민감정보에 대한 특별 취급도 없이, 시간제한도 없고, 제공되는 제3자에 대한 제한도 없이 활용하는 것은 ‘최소수집의 원칙’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iii) 그 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를 그와 전혀 성격이 다른 범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것은 처리자의 이익보다 그로 인한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 침해가 현저하게 커서, 도저히 이익형량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1단계 요건(이익이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도 충족하지 못함

이익의 정당성이 인정되려면 (i) 해당 이익이 합법적(lawful)이어야 하고, (ii) 이익은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하고(clearly and precisely articulated.), (iii) 이익은 실제적이고 현존하고, 추측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됩니다(real and

present, and not speculative).⁶⁹ 이는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의 범위가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기본적 권리 및 자유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건입니다.

그런데, 피신고인의 경우, 처리자의 이익은 ‘AI 시스템 개발’과 ‘기능’이라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포함한 ‘AI 시스템’은 블랙박스 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I 시스템 개발’이라는 것만으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한 이익으로 볼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익의 정당성부터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 2단계의 정보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움

‘정당한 이익’을 위한 처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처리의 필요성은 해당 처리로 정당한 이익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인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 이익이 개인정보주체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합리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지만 덜 침해적인 대안이 있는 경우 해당 처리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과 함께 검토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된 정당한 이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에만" 처리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제16조에 따라서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최소수집과 최소 처리의 원칙’, ‘개인정보의 익명화, 가명화 처리 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처리되어야 합니다.

⁶⁹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사법재판소(CJEU)는 “적법한 이익은 개인정보 처리 날짜에 존재하고 유효해야 하며 해당 날짜에 가정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AI 시스템 개발을 위해 정보주체의 모든 ‘전체공개 정보’를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주체의 ‘전체공개 정보’를 학습해야만 ‘AI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AI 시스템 개발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해당 처리 외에는 덜 침해인 다른 방법이 없어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모든 전체공개 정보’가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으며 처리 목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만 ‘정당한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의 경우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라. 3단계 이익형량을 충족하지 못함

(1) 이익형량 판단시 고려요소

이익형량시 고려되는 사항은 i) 정보주체의 이익, 기본권 및 자유. ii) 개인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의 영향을 ①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② 처리의 맥락, 그리고 ③ 처리로 인한 후속 영향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iii) 정보주체의 합리적인 기대. iv) 추가 위험 완화 수단의 가능성을 포함하여 반대되는 권리와 이익의 최종 형량을 해야 합니다.

(2)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이 광범위함

본 건의 경우, 정보주체의 모든 전체공개 정보를 AI 시스템의 학습과 기능을 위해 처리할 경우,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정보주체의 기본권과 자유, 이익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즉,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정보는 사생활의 보호는 물론이지만,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재산권 또는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와 같은 모든 기

본권과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주체의 재정적 이익, 사회적 이익 또는 개인적 이익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보주체에 대한 처리의 영향이 광범위함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모든 전체공개 정보를 AI 시스템의 학습과 기능을 위해 처리할 경우, 그 처리가 개인정보 주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신중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처리 과정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제3자에 의한 미래의 잠재적인 결정이나 조치, 처리가 개인에 대한 배제나 차별, 더 넓게는 평판, 협상력, 또는 개인정보 주체의 자율성 침해,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개인정보 처리로 인해 개인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처리가 개인정보 주체에 미치는 영향(해당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원인, 해당 개인에 대한 영향의 심각성 및 그러한 영향이 실현될 가능성)은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 상황 및 처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 외에도 개인정보 주체가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짜증, 두려움, 괴로움과 같은 더 광범위한 감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AI 시스템의 특징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몇 가지 점을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시스템 학습으로 인한 영향의 불확실성 : AI 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십수년간의 막대한 규모의 활동 정보가 모두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그로 인한 효과가 무엇일지, 그것이 정보주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 처리자에 의해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할 수 있는 AI 시스템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향후 잠재적인 결정이나 조치
- AI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정보 주체에 관한 법적 효과 발생 가능성
- AI 시스템에 있어서 개인에 대한 배제 또는 차별
- AI 시스템에 있어서 명예훼손 또는 보다 광범위하게는 명예, 정보주체의 협상력이나 자율성이 손상될 위험이 있는 상황
- AI 시스템에 있어서 정보주체에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손실,
- AI 시스템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안이 없는 서비스로부터의 배제,
- AI 시스템에 있어서 자연인의 자유, 안전, 신체적, 정신적 완전성 또는 생명에 대한 위험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보주체 개개인에게 직접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집단이나 그룹(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성별, 인종, 종교, 성적체성, 그룹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NOYB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AI 시스템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한 기술입니다. 이는 데이터 주체의 위험을 엄청나게 증가시킵니다. Meta가 AI 시스템의 용도를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제품은 정보 주체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실제 결과를 초래하는 오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지난 해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많은) 예 중 일부만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나치로 변한 AI 챗봇을 폐쇄⁷⁰
- Google은 수많은 오류로 인해 AI 검색 기능을 중단⁷¹
- 페이스북 연구원들이 인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AI봇 차단⁷²
- OpenAI 시스템이 사기에 사용됨(2024년에 주의해야 할 11가지 설득력 있는 ChatGPT 및 AI 사기)⁷³

AI 시스템의 전반적으로 불분명한 권한과 사용으로 인해 불만 제기자는 자신의 개인 데이터가 나중에 해당 시스템에 수집되어 나중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데이터 주체의 이익에 반하는 개인 데이터 처리는 균형 테스트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또 다른 주요 요인입니다.”

둘째, AI 시스템 학습 활용 이후 암기, 환각, 해킹의 가능성 등 : AI 시스템에서 정보주체의 소셜미디어에서의 십수년간의 막대한 규모의 활동 정보가 모두 학습 자료로 활용될 경우, 그 모델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암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즉, 대규모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포함된 민감한 세부 정보를 포함한 학습 데이터를 의도치 않게 암기(memorization)하거나 유출(leakage)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멤버십 공격이나 추론 공격 등으로 개인정보 침해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는 모델의 출력이나 내부 파라미터를 통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식별 정보(PII) 유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여러 소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집계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사용(repurposing)할 경우, 개별적으로는 덜 민감해 보였던 정보들이 결합되어 심각한 프라이버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암기한 내용에 더하여 AI 모델 특유의 환각이 더해져서 허위 사실을 답변으로 만들어 낼 가능성

⁷⁰ <https://www.cbsnews.com/news/microsoft-shuts-down-ai-chatbot-after-it-turned-into-racist-nazi/>

⁷¹ <https://www.nytimes.com/2024/06/01/technology/google-ai-overviews-rollback.html>

⁷² <https://www.firstpost.com/tech/news-analysis/facebook-researchers-shut-down-ai-bots-that-started-speaking-in-a-language-unintelligible-to-humans-3876197.html>

⁷³ <https://tech.co/news/chatgpt-ai-scams-watch-out-avoid#phishing>

도 있습니다.

셋째, 재식별(Re-identification): 데이터가 부분적으로 익명화되거나 가명 처리된 경우에도, 다른 공개 데이터셋과의 연결(linkage attack)을 통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 데이터는 사용자의 글쓰기 스타일, 활동 패턴, 체크인 정보 등 고유한 특성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보가 재식별의 단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은 과거에는 식별이 어려웠던 프로필 정보가 적은 사용자조차도 재식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민감 속성 추론(Inference of Sensitive Attributes): AI 모델은 소셜 미디어 텍스트, 메타데이터, 활동 기록 등으로부터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민감한 속성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 인구통계학적 정보(나이, 성별 등), 건강 상태, 심리 상태(우울증 등), 정치적 성향, 종교적 신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은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추론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편향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추론에 대한 권리(right to reasonable inferences)'와 같은 새로운 데이터 보호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다섯째, 편향성 증폭(Bias Amplification): 소셜 미디어 데이터에는 현실 세계의 사회적, 문화적, 인구통계학적 편향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모델이 이러한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될 경우, 기존의 편향을 학습하고 심지어 증폭시켜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확한 추론이나 불리한 예측으로 이어져 프라이버시 침해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 그룹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피부암 진단 AI가 해당 그룹에 대해 낮은 정확도를 보이는 사례는 학습 데이터의 편향성이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편향성 증폭은 재식별이나 민감 속성 추론과 결합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위험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지 않고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섯째, 오용 및 조작(Misuse and Manipulation): 소셜 미디어 데이터로부터 추론된 민감 정보나 편향된 모델 출력은 표적 광고, 맞춤형 선전, 여론 조작, 차별, 사회 공학적 공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오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취약점을 파악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시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소셜미디어 개인정보를 활용한 생성 AI로 마케팅 활용과 관련된 위험 : 최근의 AI, 특히 생성 AI는 마케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알고리즘 편향은 특정 고객 집단을 부당하게 타겟팅하거나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사회적 불평등이나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성별 그룹에게 불리한 금융 상품 광고를 집중적으로 노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민감정보의 AI 시스템 학습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가 처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민감정보 처리는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AI 시스템 학습과 기능에 민감정보가 ‘정당한 이익’을 근거로 동의도 없이 처리된다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23조 제1항).

특히, 소셜네트워크에서 이용자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중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는 수집 시점에 개인정보 항목을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상태로 일괄 수집된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세트는 전체가 민감한 개인정보로 간주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개인정보를 통해

서 민감정보에 속하는 정보를 유추하거나, 공개하는 경우 그 개인정보는 민감정보로 보아야” 하는데, AI 시스템의 경우, 뛰어난 추론 능력을 고려할 경우, 사실상 대부분의 정보가 민감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5)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 처리의 맥락

처리할 개인정보의 성격과 관련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정보주체가 게시한 모든 전체 공개 정보를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기간도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사적인 정보이며, 특히 한개인의 일대기 정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처리 규모 및 처리할 개인정보의 양**(전체 개인정보 양, 개인정보 주체당 개인정보 양, 영향을 받는 개인정보 주체 수 측면에서)이 막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NOYB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 처리에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장기간에 걸쳐 삭제된 개인 데이터를 포함하여 모든 개인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다른 사용자의 보관된 데이터 및 개인 데이터. Meta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는 단 몇 년 만에 단일 사용자당 수천 A4 페이지에 달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정보에는 정치적 성향, 재정적 배경, 성적 취향이나 건강 문제, 범죄, 참석한 행사 또는 아동 데이터를 드러내는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처리에는 Meta가 제3자로부터 수집하는 온라인 추적 데이터, 다른 사람(개인 및 기업)이 업로드한 개인 데이터 등이 포함됩니다.
- 이미 2014년에 Meta는 300PB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하루에 4PB를 추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이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했습니다.

Meta가 처리하는 개인 데이터는 주로 비공개 게시물, 비공개 공유 사진, 비공개 이벤트 또는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고 종종 소셜 미디어의 '친구'에게도 표시되지 않는 주제 및 페이지의 '좋아요' 또는 '팔로잉'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그 외의 개인정보 처리의 맥락을 보면, 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관계에서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 목적의 처리자와 이용자였을 뿐인데,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AI 시스템의 개발자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AI 시스템의 개발 단계에서 정보주체는 AI 시스템의 이용자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리할 개인정보가 다른 개인정보 세트와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한편 이용자가 전체공개를 설정해 놓더라도 이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공개를 하는 것일 뿐이므로 매우 사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개인정보의 접근성 및/또는 공개 정도에 있어서는 사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서비스의 경우, 거의 모든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소수자 등 취약한 개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은 모두 정보처리자의 이익보다는 정보주체의 권리나 이익 침해를 보호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6)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데이터 분리가 불가능한 점

피신고인은 AI 학습과 기능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경우 “AI 시스템에 일단 학습용으로 활용되는 경우, 향후 반대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대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데이터 분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7) 피신고인 1, 3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

EDPB Opinion 08/2024에서 이미 강조된 바와 같이 피신고인 Meta는 큰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으며 대규모 네트워크 효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높은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8) 무제한 “2차 처리”의 전형적인 사례

밀접하게 관련된 목적(예: 업로드된 사진에 AI 필터를 적용하는 옵션)을 위한 개인 데이터의 사용이라면, 데이터 주체의 기대와 처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데, 모든 개인 데이터(공유 또는 생성 목적에 관계없이)를 현재 또는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메타가 고려한 미공개 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관련 없는 "2차 처리"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⁷⁴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처리자의 이익과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9) 업계 표준에도 위반한다는 점

피신고인 1, 3의 태도는 AI 시스템 개발을 하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할 경우, 표준적인 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피신고인과 같이 보유하는 모든 개인정보를 AI 시스템의 학습에, 가명화나 익명화 조치도 하지 않고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AI 시스템 개발자는 X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시스템은 대체로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예: 웹 스크래핑) 또는 기타 방법으로 얻은 전용 데이터로 훈련됩니다.

마. 소결

⁷⁴ NOYB 신고서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 1, 3이 이용자의 매우 민감한 소셜 미디어의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무단 사용하겠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인정되려면 ‘균형 테스트’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추구하는 정당한 이익이 개인정보 주체의 이익, 기본 권리 및 자유보다 우월함을 입증해야 하는데, 처리자인 피신고인은 이를 입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VII. 처리정지와 동의 철회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처리정지와 동의철회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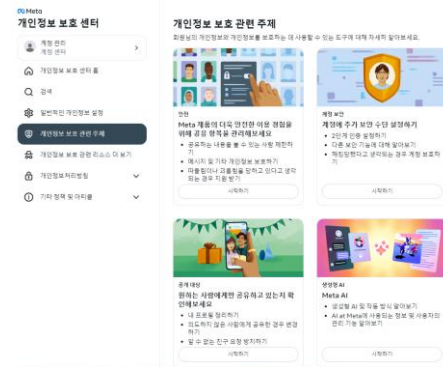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데(제37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할 때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비하여 어렵지 아니하도록 해야 합니다(제44조 제1항, 제41조 제2항).

2. 피신고인 1, 3은 처리정지나 동의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신고인 1의 경우 이용자에게 학습 개인정보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보장한다고 하는데, 기만적이고, 위법합니다.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찾기 어렵고, 처리중지를 요청하는 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센터에서 AI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라는 항목 안에 숨겨져 있어서, 해당 항목을 클릭해야만 하부 메뉴가 표시됩니다. AI 개인정보 처리와 같이 중요한 내용이 첫 화면에는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문제이고, 포함된 카테고리도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라는 제목이어서 AI 관련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방침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제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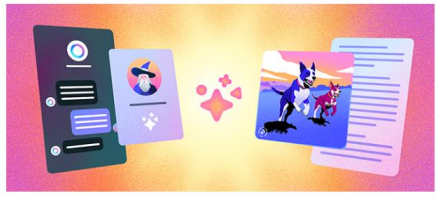


위 화면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제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Meta AI를 클릭하면 비로소 맨 아래에 ‘이의제기 요청 제출하기’가 있습니다.

- Meta
- 개인정보 보호 센터
- 계정 관리
- 계정 센터 >
- 개인정보 보호 센터 홈
- 검색
- 일반적인 개인정보 설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제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소스 더 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 기타 정책 및 어필 >



생성형 AI
Meta AI

Meta 제품에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Meta AI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Meta AI는 Meta 앱 내 생성형 AI 기능 및 경험의 일련성으로, 이러한 기능 및 경험을 지원하는 모델을 포함합니다. 생성형 AI, Meta AI를 위해 Meta가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 및 사용자의 권리 기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생성형 AI에 대해 알아보기

- 생성형 AI란? >
- Meta AI에 사용되는 정보 >
- 생성형 AI 모델의 작동 방식 >
- 추가 리소스 검토하기 >

이의 제기 요청 제출하기

- 회원이 Meta 제품 및 서비스에 공유한 정보 >
- 타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적인 정보 >

그 중 Meta AI의 내 정보 사용에 대한 이의 제기를 클릭하면,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개인정보 처리가 회원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주관식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이의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어서 포함되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포함하려고 한다면 이의제기를 처리해 준 후에 추가적으로 선택형으로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Meta 제품 및 서비스에 공유한 정보와 관련된 다른 권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십시오.

이메일 주소
(필수)

_____ .com

이 데이터 처리가 회원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세요.
(선택 사항)

제출

반면, 피신고인 3은 아예 동의철회를 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VIII. 기타

1. 최소수집의 원칙과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때에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필요 최소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제16조).⁷⁵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제1항도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7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의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신고인 1, 3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도,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도 이와 같은 최소수집의 원칙, 개인정보 추가 제공 거부 이유로 한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 위반, 익명 또는 가명처리 의무 위반입니다.

⁷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민감정보의 이용제한 위반

한편, 민감정보(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집, 처리할 수 없습니다(제23조).

피신고인 1, 3은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도,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 측면에서도 민감정보 처리제한의 원칙을 위반하였습니다.

IX. 결론

이상으로 본 바와 같이 피신고인 1, 3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AI 모델 개발을 위한 훈련 데이터로 활용하고, 이를 AI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고, 제3자에게도 AI 모델 훈련용 데이터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는 전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I 모델에 활용될 경우 개인정보 주체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정보 제공도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주체에게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5. 4. 16.

신고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 변호사 이 은 우

담당 변호사 남 상 철

담당 변호사 이 상 희

담당 변호사 김 묘 희

담당 변호사 노 정 연

담당 변호사 김 기 탁

별첨 : 신고인 명단

1. 신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페이스북(/jinbonet), 인스타그램(@jinbonet), X (@jinbonet)
2. 신고인 (사)정보인권연구소
페이스북(/digitalrightskorea)
3. 신고인 오병일
페이스북(/antiropy), 인스타그램(@antiropy)
4. 신고인 장여경
페이스북(/yk.chang.731)
5. 신고인 정선화
페이스북(/hwizen), 인스타그램(@hyiuuuuu)
6. 신고인 이현담
인스타그램(@dlwltn94), X(@dmdmdmii)